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
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24. 7. 1일자 국 신설에 따른 분과위원회 추가와 관련하여 정책자문위원수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정책자문위원 위원수 정원 확대(안 제3조 제1항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9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865호, 2024. 7. 29.)

라. 입법예고: 2024. 7. 22. ~ 8. 12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1명”를 “60명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문단 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<u>51명</u> 이내의 정책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② · ③ (생략)	제3조(자문단 구성) ① ----- ----- <u>60명</u>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정책자문단 위원수 확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연 14,8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※ 예상 소요비용: 14,840천원(70,000원*53명*4회)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윤승재
- 연락처: (052)290-3142